

주요 정책 업데이트

2026년 9월



목차

1. 공문 제4676/CT-CS호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지침.

2. 공문 제2265/CST-GTGT호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지침.

3. 공문 제10049/NBI-QLDN1호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 10% 원천징수 관련 지침.

4. 공문 제4176/KHH-QLDN3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의 외국인 계약자세(FCT) 신고의무 관련 지침.

1. 공문 제4676/CT-CS호 (2026년 7월 8일)

해외에서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운영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FCT) 납세의무 관련 지침.

베트남 기업이 미국 내 Amazon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운영 지원
- 판매자 계정 관리
-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및 조정
- 운영 활동 지원
- 기타 전자상거래 관리 서비스

납세자는 상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지침을 요청합니다.

공문 제4676/CT-CS호 (2026년 7월 8일)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유의사항

1.1. 주요 내용

외국인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서비스가 베트남 영토 밖에서 수행되고,
- 서비스가 베트남 영토 밖에서 소비되며,
- 미국 내 Amazon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CT)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실무상 유의사항

이번 지침은 세무당국이 세금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장소
-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소비된 장소
-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의 거주지에 근거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성격 및 목적

1.3. 잠재적 리스크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당국이 다른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관련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가 베트남 내에서 일부 수행되는 경우
-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 베트남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 해외에서의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증빙자료 및 관련 문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FCT) 납세의무는 개별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당국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문 제2265/CST-GTGT호 (2026년8월4일)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지침

납세자는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요건과 해당 우대세율 적용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지침을 요청합니다.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르면, 수출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해당 서비스가 베트남 국외에서 소비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문 제2265/CST-GTGT호 (2026년 8월 4일)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유의사항

1.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수출 서비스는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해외 소재 법인 또는 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할 것
- 서비스가 베트남 영토 밖에서 소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유할 것
- 관련 규정에 따른 비현금 결제 증빙을 보유할 것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및 증빙요건을 충족할 것

2. 실무상 유의사항

서비스가 베트남 국외에서 실제로 소비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세무당국은 계약서상의 조항만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거래의 실질과 서비스의 실제 소비 장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서비스가 베트남 외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정보
- 시스템 접속 기록(Log Data)
- IP 주소 정보
- 서비스 이용 데이터
- 기타 관련 입증자료 및 보조 문서

3. 잠재적 리스크

수출 서비스 제공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는 향후 세무조사 또는 세무점검에 대비하여 자사의 세무 처리 입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자료와 관련 문서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소비 장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VAT) 0% 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공문 제10049/NBI-QLDN1호 (2026년8월3일)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10% 원천징수 관련 지침

근로계약 종료 시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관련 주요 유의사항

세무당국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사용자가 10%의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심야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노동법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등 비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정보험료, 부양가족공제 및 기타 공제항목은 10% 세율에 따른 임시 원천징수 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항목은 개인이 개인소득세(PIT)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시점에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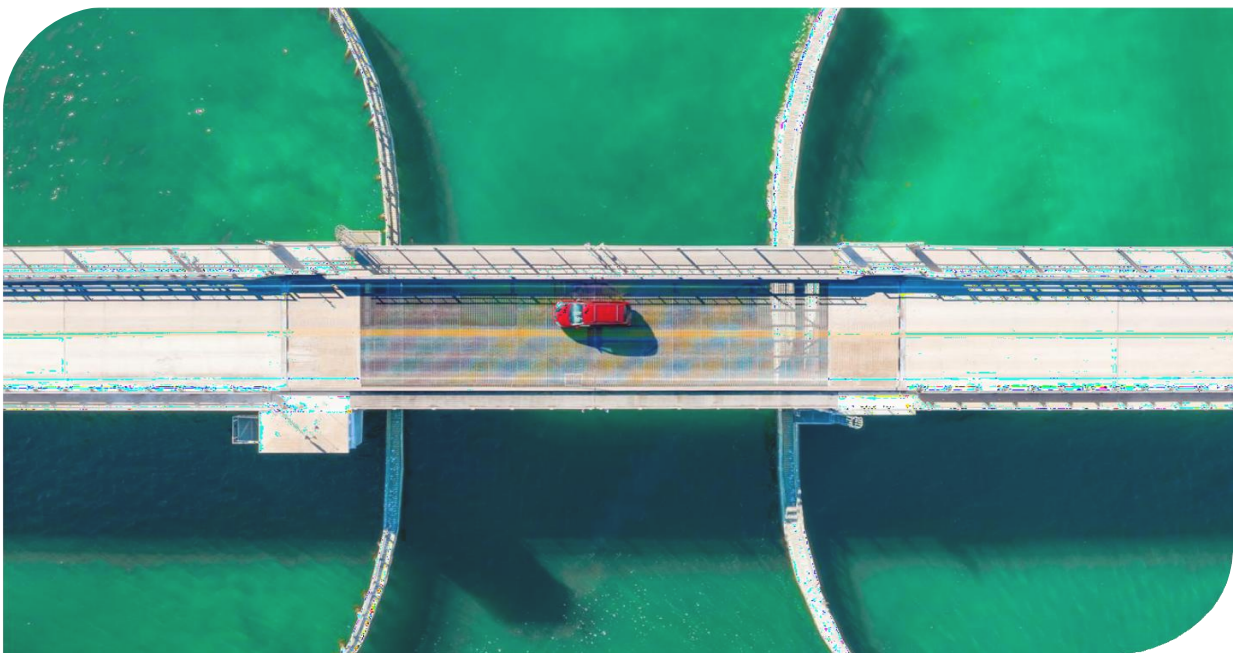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면제 확약서

근로자는 10%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각종 공제 반영 후 연간 예상 과세소득이 납세의무 발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 면제 확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법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개인소득세(PIT)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 명단을 집계하여 보고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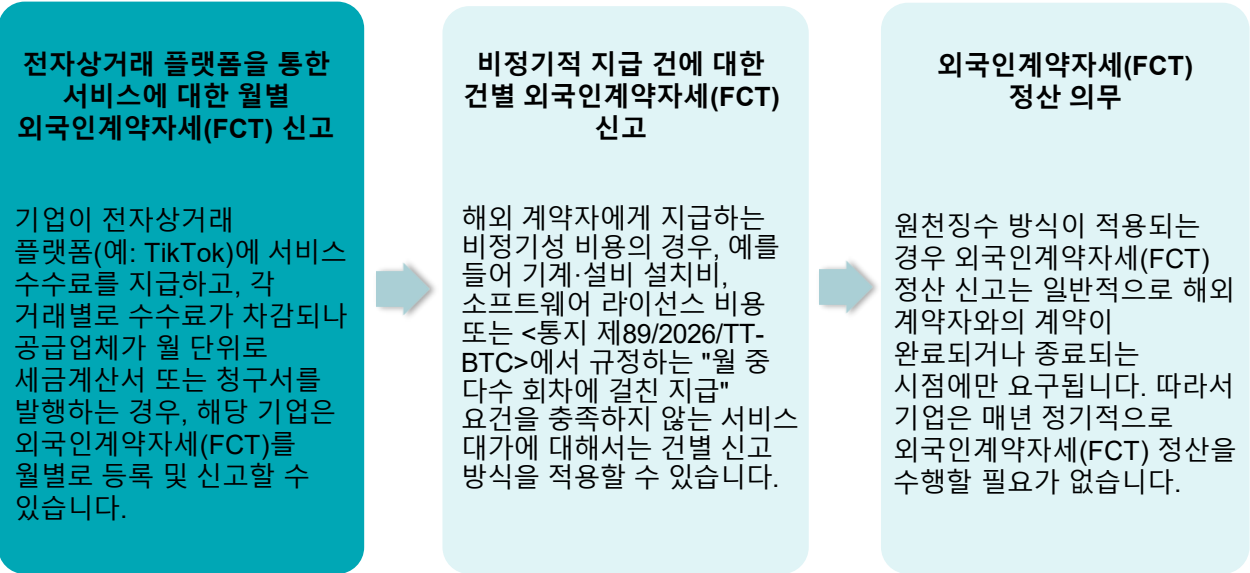
근로자를 위한 유의사항

개인이 추가적인 과세소득을 발생시켜 납부할 개인소득세(PIT)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신고·정산 및 납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또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공문 제4176/KHH-QLDN3호(2026년8월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거래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FCT) 신고의무 관련 지침



납세자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

세무당국이 디지털 경제 관련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국경 간 지급거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관리 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Cloud-based Services)
- SaaS(Software as a Service) 구독료
- 기타 국경 간 디지털 기술 서비스

기업은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함으로써 외국인계약자세(FCT) 납세의무, 적절한 신고 방식 및 신고·납부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무조사 및 세무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귀사는 새롭게 공포된 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및 통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및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추가 세액 부담이나 행정제재 위험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통관 컴플라이언스 이행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Grant Thornton Vietnam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Tax Newslette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Nghia Do Ward,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T +84 24 3850 1686 – Ext: 1618

E Khoi.Hoang@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T +84 24 3850 1686 – Ext: 1716

E Ngan.Bui@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Thanh My Tay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Valerie Teo

Partner, Head of Tax Services of HCMC Office

T +84 28 3910 9100 – Ext: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Associate Partners

T +84 28 3910 9100 – Ext: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40

E Tho.Lac@vn.gt.com



Dang Hai Ha My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41

E My.Dang@vn.gt.com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77

E Khanh.Do@vn.g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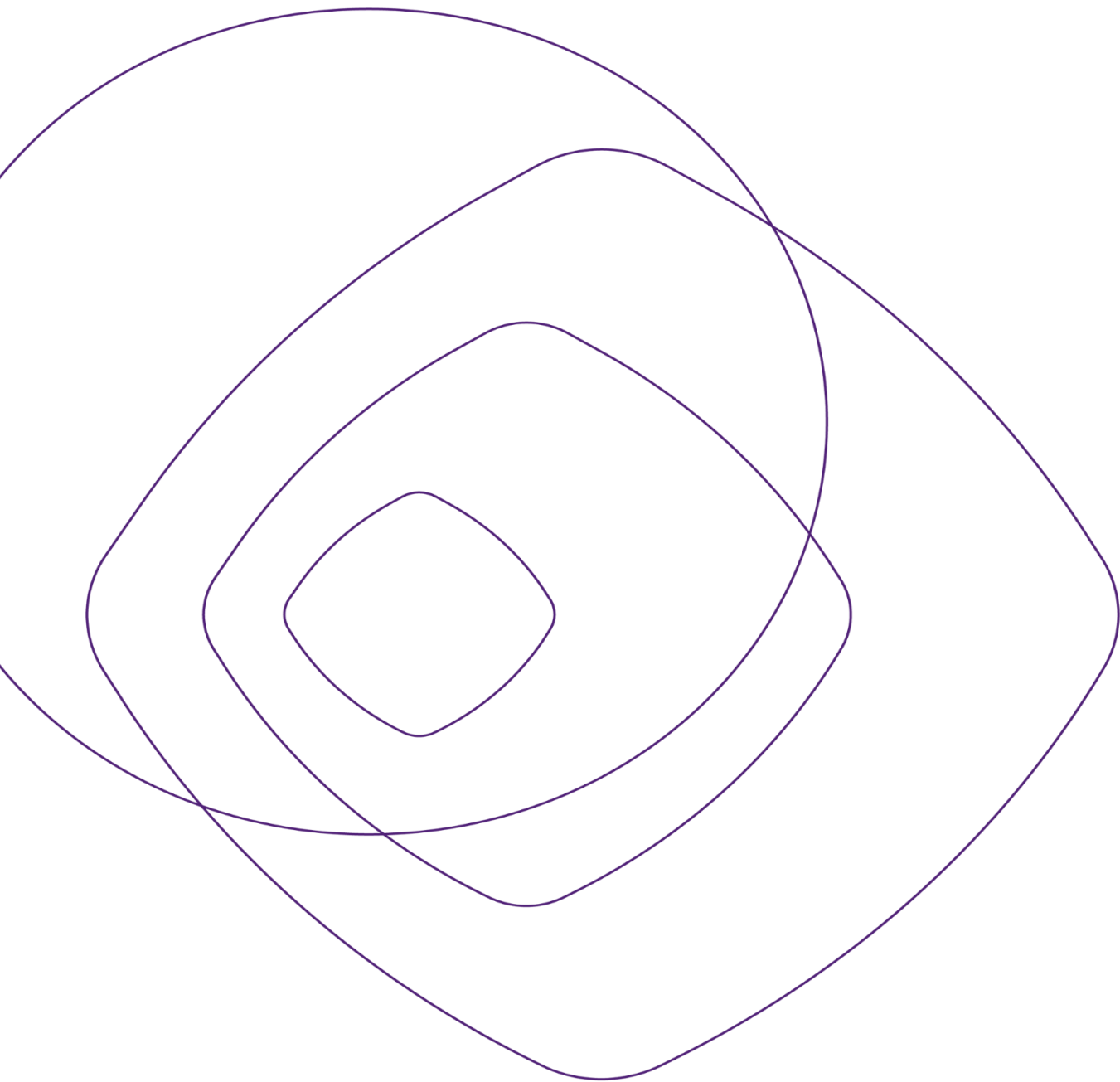


Nguyen Dinh Huy

Tax Director

T +84 28 3910 9100 – Ext: 9263

E Huy.Nguyen@vn.gt.com



Grant Thornton

grantthornton.com.vn

© 2026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